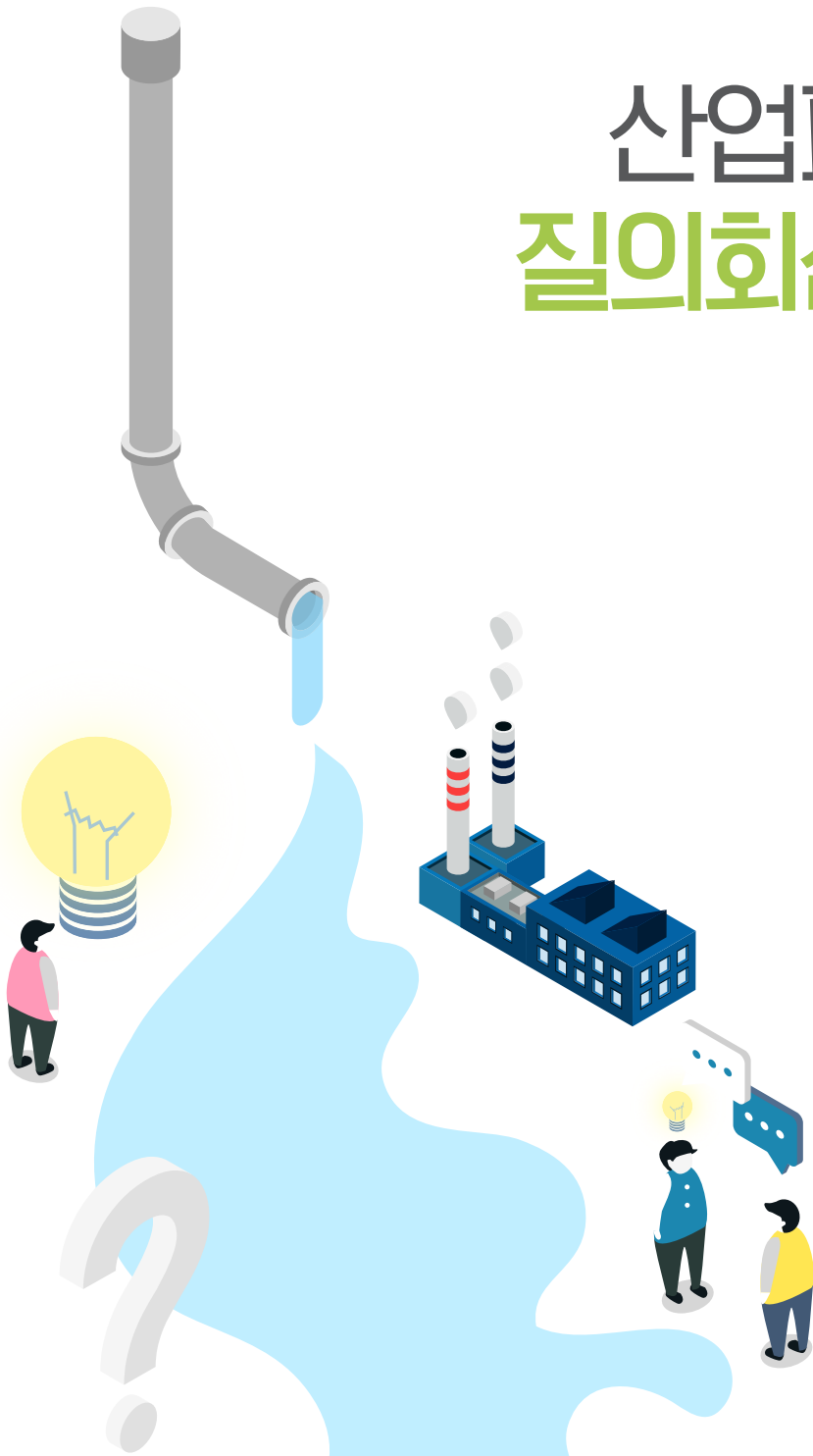


산업폐수 분야 질의회신 사례집

2020.12



산업폐수 분야 질의회신 사례집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은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문서 또는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질의에 대한 답변 사례를 현장에서의 적용성·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법 체계에 맞게 표준화 한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서 볼 수 있으며, 개별사업장과 지자체는 시설관리 및 인허가 검토과정에서 참고용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질의회신 사례집의 내용은 향후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폐수배출시설

1-1 인허가

1-1-1 허가신고	11
1-1-2 적용(제외) 대상	22
1-1-3 무방류	27
1-1-4 입지제한	29
1-1-5 배출량산정	33

1-2 방지시설

1-2-1 가동(변경) 신고	35
1-2-2 운영	37
1-2-3 면제	40
1-2-4 환경전문공사업	43

1-3 환경기술인

1-3-1 선임	45
1-3-2 법정교육	48
1-3-3 자격	51

II. 측정기기

2-1 TMS-부착 및 면제	54
2-2 측정기기-부착 및 면제	58

III. 행정처분

61

IV. 기타수질오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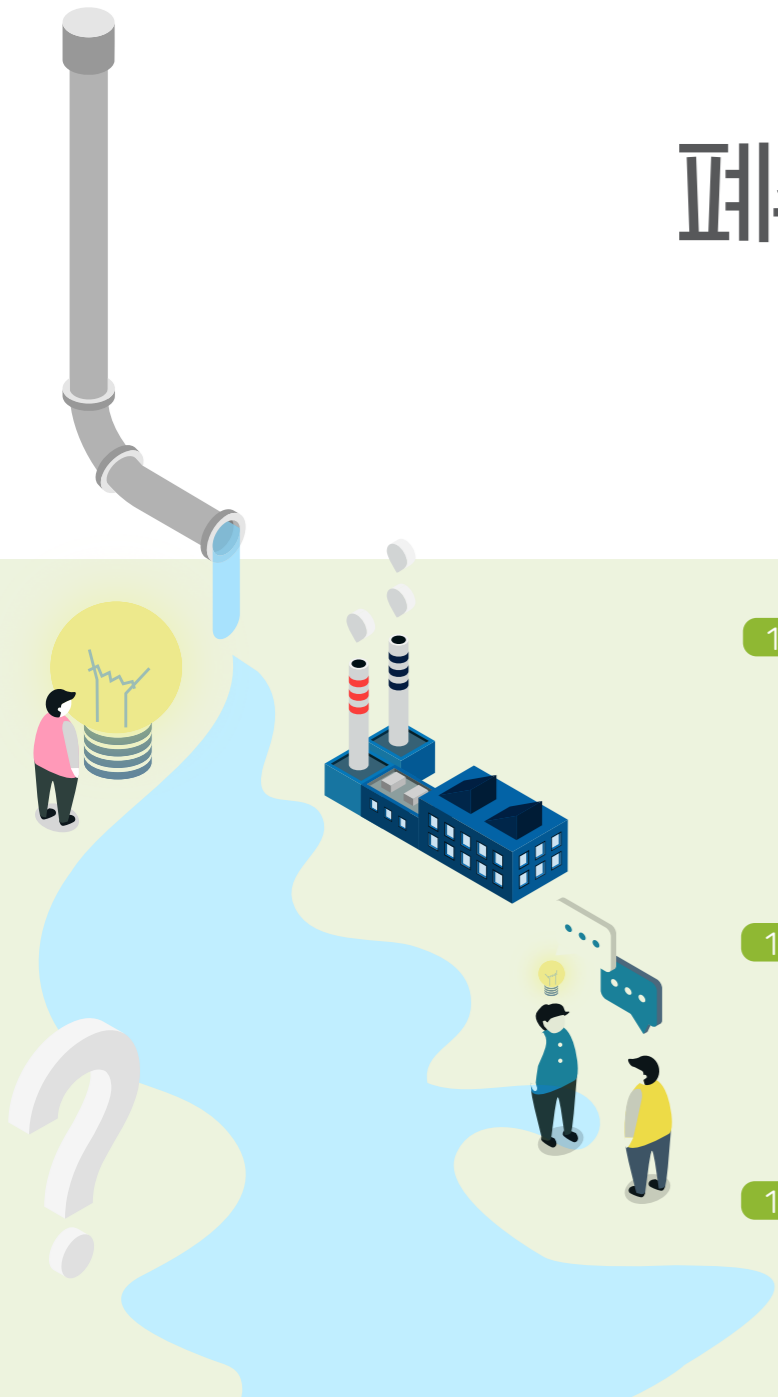
65

V. 폐수처리업

68

물환경보전법 제7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각 시·도는 조례를 통해 일부 시설의 허가·신고 권한을 관할 시·군·구로 재위임하여 운영하고 있음

제1장 폐수배출시설



1-1 인허가	
1. 허가신고	11
2. 적용(제외) 대상	22
3. 무방류	27
4. 입지제한	29
5. 배출량산정	33
1-2 방지시설	
1. 가동(변경) 신고	35
2. 운영	37
3. 면제	40
4. 환경전문공사업	43
1-3 환경기술인	
1. 선임	45
2. 법정교육	48
3. 자격	51

1-1-1 허가신고

1.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배출량 증가 시 변경허가 여부	11
2. 액상 폐기물(폐수) 처리 관련 인허가 절차 문의	11
3. 폐수배출시설 권리의무 승계 가능 여부	12
4. 폐수배출시설 소유권 이전 시 권리의무승계 절차	12
5. 새로운 수질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변경신고 여부	13
6. 특정수질유해물질 허가 여부	13
7. 폐수배출시설 휴업 신고 절차	14
8. 공동방지사설의 변경신고 관련 문의	14
9. 폐수배출시설 이전 관련 문의	15
10. 폐수배출시설 노후화 교체에 대한 변경신고 대상 여부	15
11.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 여부	16
12. 기존시설 철거 및 동일시설 설치 시 기간중 휴업신청	16
13. 폐수배출시설 임대차 시 변경신고 주체 여부	17
14. 폐수위탁처리업자 상호변경 시 변경신고 여부	17
15. 폐수배출시설 '공정단위별'의 의미	18
16. 공정에 이용되는 보일러 세관 폐수의 인허가 여부	18
17. 각각 다른 배출시설을 동일 대표자 운영 시 인허가 여부	19
18. 전량재이용 시설의 폐수배출량 증가 시 변경 인허가 여부	19
19. 사업장 규모기준 폐수배출량초과 시 변경신고 여부	20
20. 폐수배출량 증가 시 변경신고 기준 여부	20
21. 수질오염방지시설 일부 공정의 배제 가능 여부	21

1-1-2 적용(제외) 대상

1. 병원시설의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	22
2. 수술교육센터의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	22
3. 폐기물처리업(매립장 침출수)의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	23
4.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폐수배출시설 여부	23

- 5.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한 폐수의 기준 24
- 6. 이화학시험시설의 폐수배출시설 제외 여부 24
- 7. 수도사업시설의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 25
- 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 25
- 9. 동일인이 다른 소재지에서 동일 시설 운영 시 적용기준 26
- 10. 폐기물로 처리하는 폐수의 배출시설 대상 여부 26

1-1-3 무방류

-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조건 27
- 2. 전량 재이용시설의 폐수무방류배출시설 해당 여부 27
- 3. 폐수무방류폐수처리시설의 한시적 외부방류 가능 여부 28

1-1-4 입지제한

- 1. 설치제한지역 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가능 여부 29
- 2. 계획관리지역 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가능 여부 29
- 3.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내 입지가능 여부 30
- 4. 특정수질유해물질 전량위탁 시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 여부 30
- 5. 특정수질유해물질 적용기준 이하 자가처리 시 입지 여부 31
- 6. 농공단지 내 폐수배출시설 입지 여부 31
- 7. 폐수 전량 재이용 시설을 전량 위탁처리 시설로의 인정 여부 32

1-1-5 배출량산정

- 1. 사업장 증별 구분을 위한 폐수배출량 산정 기준 33
- 2. 폐수배출량 산정 시 예비용 설비 반영 여부 33

- 3. 폐수배출량 산정 기준 34
- 4. 전량 재이용시설의 폐수위탁 처리 가능량 34

1-2-1 가동(변경) 신고

- 1. 폐수배출량 증가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 유무 35
- 2. 폐수처리방법 변경 시 가동시작 신고대상 여부 35
- 3.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후 가동시작 신고 기한 관련 36
- 4. 전량재이용 또는 전량위탁 시설의 가동시작 확인 36

1-2-2 운영

- 1. 공동방지사설 운영에 따른 사업장 규모 질의 37
- 2. 공동방지사설 전문업체 위탁운영 여부 37
- 3. 배출시설 폐쇄 후 공동방지사설 운영 가능 여부 38
- 4. 차량을 이용한 폐수의 공동방지사설 유입가능 여부 38
- 5. 폐수배출시설의 수질오염물질 측정 의무 39
- 6. 수질오염방지사설 운영일지 결재권자 여부 39

1-2-3 면제

- 1. 사업장 폐수 재이용 시 방지사설 설치면제 여부 40
- 2. 폐수를 지정폐기물로 처리 시 방지사설 설치대상 여부 40
- 3. 폐가스 응축수 처리를 위한 별도 방지사설 설치 여부 41
- 4. 사업장 내 청소수의 방지사설 면제 대상 여부 41
- 5. 보일러 스팀 응축수 처리 관련 방지사설 설치면제 여부 42
- 6.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폐수의 방지사설 설치 대상 여부 42

1-2-4 환경전문공사업

- 1. 물환경보전법 상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자격 43
- 2. 방지시설 설계·시공 시 자체 설계·시공 가능 여부 43
- 3. 동일한 방지시설의 단순 노후 교체 시공 44

1-3-1 선임

- 1. 환경기술인의 사업장 상주 여부 45
- 2. 방지시설 현장 종사자의 자격기준 45
- 3. 관리대행기관의 환경기술인 선임방법 문의 46
- 4. 환경기술인의 겸임 (수질/대기 분야) 관련 문의 46
- 5.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와 환경기술인 겸직 가능 여부 47

1-3-2 법정교육

- 1. 환경관리대행기관의 법정교육 수료인정 여부 48
- 2. 휴업 중인 사업장의 법정교육 대상 여부 48
- 3. 환경기술인의 법정교육 이수 확인방법 49
- 4. 환경기술인의 교육이수 주기 기준 49
- 5. 환경기술인 신규 선임에 따른 교육이수 여부 50

1-3-3 자격

- 1. 1종 사업장에 복수의 환경기술인 선임 시 자격요건 51
- 2.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공동방지시설 유입 사업장의 기술인 자격 51
- 3. 공동방지시설 유입 사업장의 환경기술인 임명 52
- 4. 새로운 환경기술인의 임명 기한 52



1-1-1. 허가신고

Q1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배출량 증가 시 변경허가 여부

적정처리 과정을 거쳐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폐수가 폐수배출시설 허가증상 폐수배출량을 초과(30/100 이상)하여 방류되는 경우,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또는 1일 700m³ 이상 증가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함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와 별개로 폐수배출량이 기준 이상 증가하는 경우 변경허가(신고) 대상에 해당함

Q2

액상 폐기물(폐수) 처리 관련 인허가 절차 문의

바이오가스 플랜트에서의 발생폐수를 농축한 농축액(발생폐기물은 육안상으로 폐수이나 고형물이 40%이상)의 경우 폐기물/폐수 중 어떤 항목으로 보고 인·허가를 등록하여야 하는지?

물환경보전법 상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는 경우 폐수로 볼 수 있음

아울러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일 경우, 같은법 제33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로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Q3

폐수배출시설 권리의무 승계 가능 여부

물환경보전법 제36조(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따라 폐수 배출시설 권리 양도시 사업장 전부가 아닌 일부 폐수배출시설만 양도 가능한지?

사업장 내 다수의 폐수배출시설 중 일부의 배출시설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를 위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Q4

폐수배출시설 소유권 이전 시 권리의무승계 절차

폐수배출시설 소유권이전(변경 전 A사 → 변경 후 B사)시 변경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폐수배출시설이 A에서 B로 양도된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36조에 따라 B가 A의 폐수배출시설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B가 사업장 명칭 및 대표자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Q5

새로운 수질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변경신고 여부

공정에서 발생하지 않으나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용수(원수)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추가될 경우 변경신고 대상인지?

폐수배출시설(생산공정시설)에 사용되는 용수에 의해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Q6

특정수질유해물질 허가 여부

매우 낮은 농도의 특정수질유해물질(포름알데이드) 배출 시 폐수배출 시설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의2에 따른 적용기준 이상 배출 시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적용기준 미만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설치신고에 해당됨

Q7

폐수배출시설 휴업 신고 절차

경제적 사정에 의해 폐수배출시설을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폐수배출시설 운영을 중단하여 폐수배출량이 없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4호의2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것으로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인허가증을 반납하지는 않음)
아울러 동 변경신고는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Q8

공동방지시설의 변경신고 관련 문의

공단내 공동방지시설로 유입되는 사업장의 명단 및 수가 변경될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는 공동방지시설로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 전체의 폐수배출량 또는 그 사업장의 수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이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Q9

폐수배출시설 이전 관련 문의

폐수배출시설 이전에 따라 인허가 관련 제반사항도 함께 이전이 가능한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관청 및 폐수배출시설이 같고,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 이전하는 소재지의 허가·신고관청이 다르거나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런 경우 같은법 제33조에 따라 이전 소재지 관할 허가·신고관청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

Q10

폐수배출시설 노후화 교체에 대한 변경신고 대상 여부

폐수배출시설(세륜시설) 노후화로 인한 시설 교체(기존시설과 처리방법 및 용량 동일) 시 변경신고 대상인지?

기존시설 철거 후 동일한 규격의 새로운 폐수배출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재 설치 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에 속하지 아니하고 제2항 제1호부터 제4의2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변경신고를 받아야 함

Q11

대표자변경에 따른 변경신고 여부

폐수배출시설에서 동일한 소재지에 대표자만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 대상인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에는 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Q12

기존시설 철거 및 동일시설 설치 시 기간중 휴업신청

공정개선의 목적으로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기존시설을 전부 철거하고 신규로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기존시설 철거 및 동일시설 설치 기간 중 휴업이 가능한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4의2호에서는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 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변경 신고(휴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Q13

폐수배출시설 임대차 시 변경신고 주체 여부

폐수배출시설을 임대차 하는 경우 변경신고 및 환경기술인 선임 주체는 누구인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폐수배출시설을 임대차 하는 변경신고의 주체는 임대인이 되어야 함

또한, 물환경보전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임차인에게 환경기술인 선임의 의무가 승계되므로, 임차인이 배출시설의 환경기술인을 선임하여야 함

Q14

폐수위탁처리업자 상호변경 시 변경신고 여부

폐수처리업체가 단순히 상호를 변경한 경우 폐수를 위탁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폐수처리업체의 단순상호 변경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4호에 따른 폐수를 위탁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5호에 따른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함

이 경우, 폐수처리업체의 상호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폐수처리업등록증 사본 및 변경된 상호로 작성된 폐수 위·수탁계약서 등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Q15

폐수배출시설 '공정단위별'의 의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의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 단위별 시설' 규정에서 '공정단위별'의 의미는 무엇인지?

'공정단위별'이란 원료 투입부터 제품생산까지 폐수를 배출하는 일련의 생산공정을 의미함
폐수배출시설의 인허가 및 지도점검 등은 동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Q16

공정에 이용되는 보일러 세관 폐수의 인허가 여부

제품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보일러의 경우 세관 폐수를 폐수배출시설 인허가증에 포함하여 신고를 해야 되는지?

공정에 직접 이용되는 경우 해당 보일러를 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시 부속시설로 함께 허가(신고)하고, 배출되는 세관폐수는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유입처리하거나 폐수처리 업체에 위탁하는 등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함

Q17

각각 다른 배출시설을 동일 대표자 운영 시 인허가 여부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복수의 사업장(사업자 번호 상이)의 경우 각각 별도 사업장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사업장으로 설치신고 하여야 되는지?

대표자가 동일하더라도 사업장 명칭과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 별도로 폐수배출시설 인허가를 득하여야 함

Q18

전량재이용 시설의 폐수배출량 증가 시 변경 인허가 여부

사업장 외부로 배출되지 않는 허가시설(전량 재이용)이 증설로 폐수배출량이 증가되었다면 변경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라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은 100분의 30) 또는 1일 700m³ 이상 증가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여 같은법 시행령 별표 13의 사업장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Q19

사업장 규모기준 폐수배출량초과 시 변경신고 여부

설치신고 대상 4종 사업장에서 그 기준인 1일 폐수배출량 200m³을 하루 초과한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함

해당 사업장이 현재 4종 사업장에 해당하며, 폐수배출량이 1일 최대 200m³을 초과한 경우라면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장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변경신고를 득하여야 함

Q20

폐수배출량 증가 시 변경신고 기준 여부

사업장에서 A, B, C 폐수배출시설을 신고·운영 중에 A시설에서 폐수배출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사업장 기준으로 100분의 50이상 증가 미해당)한 경우 변경신고 대상인지?

폐수배출량 증감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은 사업장 전체 폐수량 아닌 폐수배출시설별 기준임 따라서, A시설의 폐수배출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한 경우 A시설에 대한 변경신고를 득하여야 함

Q21

수질오염방지시설 일부 공정의 배제 가능 여부

폐수처리 공정 중 일부 공정을 배제하여도 배출허용기준 준수가 가능함에도, 인허가증상 처리공정을 모두 거쳐야 하는지?

당초 인허가사항과 달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허가(신고)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일부 처리공정을 거치지 않아도 무방함 이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라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을 변경하여 운영할 경우에 해당하여 사전에 변경신고를 득하여야 함

1-1-2. 적용(제외) 대상

Q1 병원시설의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
 일 최대 0.1m³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병원시설이 종합병원 규모 미만인 경우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의료법 상 종합병원 규모 미만의 경우와 수술·처치·병리실이 없는 병원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Q2 수술교육센터의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
 수술기구 세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수는 광유류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이고, 1일 최대 폐수량이 20m³ 이하일 경우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되는지?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광유류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1일 최대 폐수량이 20m³ 이하로서 공공하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폐수를 유입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됨

Q3 폐기물처리업(매립장 침출수)의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
 매립장 침출수를 인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할 경우,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매립장의 침출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 할 경우 물환경보전법 별표4의 2.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5)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에 해당됨
 다만, 폐기물처리업의 발생 폐수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폐수배출 시설에서 제외됨

Q4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폐수배출시설 여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적용기준 미만으로 배출된다면 이는 미배출 시설로 볼 수 있는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의2에 규정한 적용기준 미만 배출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의미함
 '미배출'은 해당 수질오염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함

Q5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한 폐수의 기준

세탁시설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 안에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한 폐수를 오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은 제외한다”는 규정에서 폐수의 기준이 무엇인지?

세탁시설에서 발생하는 원폐수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의2의 적용기준 이상 함유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Q6

이화학시험시설의 폐수배출시설 제외 여부

이화학시험시설 발생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유입처리 시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되는지?

해당 시설이 독립된 시설(면적 100㎡ 이상)로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유입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함

다만, 이화학시험시설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부속 시설로서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됨

Q7

수도사업시설의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

수도사업시설의 정수능력이 1천㎥/일 이상이나 시설에서 역세척 및 약품 사용이 없는 경우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되는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수도사업시설’ 중 역세척 하지 아니하고 물리적으로만 처리하거나, 정수능력이 1천㎥/일 미만의 시설은 제외됨

Q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 폐수배출시설 중 78번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정수능력이 일 100톤이상)의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이 생산수 기준인지? 원수 공급기준인지?

해당시설의 정수능력은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함

1-1-3. 무방류

Q9 동일인이 다른 소재지에서 동일 시설 운영 시 적용기준
동일인이 같은 시설을 각각 다른 소재지에서 운영 시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은?

허가·신고관청이 동일하고 배출폐수를 하나의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유입처리할 경우 하나의 폐수배출시설로 적용함
다만, 허가·신고관청이 동일하더라도 배출폐수를 각각의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유입 처리할 경우에는 각각 폐수배출시설로 적용함

Q10 폐기물로 처리하는 폐수의 배출시설 대상 여부
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성상이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어도 폐수배출 시설에 해당되는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성상이 지정폐기물에 해당될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호에 따라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 처리 할 수 있음
이와같이, 폐수의 처리방법을 달리한다는 사유로 폐수배출시설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

Q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조건
물환경보전법 상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와 관련된 전반적 사항에 대한 문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는 ①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물질(구리 및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을 배출하는 배출 시설로서 ②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 내지 제10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에서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및 시설로 고시된 경우에 한함 아울러,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에 따라 차단·저류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에 해당함

Q2 전량 재이용시설의 폐수무방류배출시설 해당 여부
전량재이용(방지시설 설치면제) 시설이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란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서 구리 및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을 포함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배출시설로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3호에 따른 전량 재이용시설은 폐수무방류배출 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Q3

폐수무방류폐수처리시설의 한시적 외부방류 가능 여부

폐수무방류배출시설 허가받은 시설이 한시적으로 폐수를 반출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해당 사업장에서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폐수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하므로, 시설의 고장, 사고 등으로 폐수가 누출·유출되거나 빗물 등에 의하여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차단·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은 물론, 폐수의 한시적 반출처리는 불가함

1-1-4. 입지제한

*타부처 소관법령(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소관)) 중 배출시설 입지제한 규정에 대한 최종해석권한은 소관부처에 있음

Q1

설치제한지역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가능 여부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이 가능한지?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4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을 지정·고시하고 있음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된 경우 해당구역 고시 제3조에 의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의2에 따른 적용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은 설치를 제한하고 있음

Q2

계획관리지역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가능 여부

계획관리지역에서 운영 중인 폐수배출시설(5종)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신규로 배출될 경우 변경허가를 통해 입지가 가능한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 제1호자목 (1)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은 1~4종 사업장, 특정수질유해물질 적용기준 이상 배출 사업장에 대한 입지를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적용기준 이상 검출된다면 변경허가 및 입지가 불가한 시설에 해당함

Q3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내 입지가 가능 여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방지시설에서 적용기준 이하로 처리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한다면, 설치제한 지역에 폐수배출시설의 입지가 가능한지?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라 함은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의하여 처리되기 전의 폐수(원폐수)를 의미함
따라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적용기준 이상 배출하는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설치제한 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적용기준 이상 배출되는 경우라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법적 기준 미만으로 항상 처리하여 방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더라도 입지는 불가함

Q4

특정수질유해물질 전량위탁 시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 여부

시설에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위탁 처리한다면 계획관리지역에 내 입지가 가능한지?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라 함은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의하여 처리되기 전의 폐수(원폐수)를 의미함
적용기준 이상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위탁 처리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 제1호자목 (1)호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적용기준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는 불가함

Q5

특정수질유해물질 적용기준 이하 자가처리 시 입지 여부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적용기준 이하로 자가처리 한다면, 입지가 가능한지?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라 함은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의하여 처리되기 전의 폐수(원폐수)를 의미함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처리와 관계없이, 적용기준 이상 배출되는 경우 입지가 불가함

Q6

농공단지 내 폐수배출시설 입지 여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방지시설을 통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 시 농공단지 입주가 가능한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제2항제4호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적용기준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입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같은 지침 제36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일부 사업장(방지시설을 거치지 않더라도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 또는 전량 위탁처리)에 대해 관할 유역 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 또는 증설을 허용할 수 있음

1-1-5. 배출량산정

Q7 폐수 전량재이용 시설을 전량 위탁처리 시설로의 인정 여부
 물환경보전법 외 타 법령에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경우 입지가 가능하다면, 재이용 후 위탁처리하는 시설도 입지가 가능한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호는 폐수를 제조공정에서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로서 더 이상 재이용이 불가능한 폐수가 부득이 공정 밖으로 배출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위탁처리를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폐수의 전량 재이용 사업장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입지를 허용할 수 없음

Q1 사업장 종별 구분을 위한 폐수배출량 산정 기준
 사업장의 조업시간 및 일자가 불규칙한 경우 폐수배출량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되는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3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 따라 폐수배출량은 1년 중 가장 많이 배출한 날을 기준으로 함

또한, 최초 배출시설 설치허가 시의 폐수배출량은 사업계획에 따른 예상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함

Q2 폐수배출량 산정 시 예비용 설비 반영 여부
 사업장 내 배출시설(상시) 고장에 대비해 동일 용량의 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비용 설비에 대한 폐수배출량도 함께 포함하여야 하는지?

상시가동 설비를 고장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만 예비용 설비를 사용한다면(상시용과 예비용 시설이 동시에 같이 사용되지 않음) 상시용 설비에서 배출되는 폐수량으로 산정할 수 있음

다만, 예비용 설비도 폐수배출 공정흐름도에 포함하여 함께 관리되어야 함

1-2-1. 가동(변경) 신고

Q3

폐수배출량 산정 기준

1일차 폐수 50m³/일을 처리하지 않고 집수조에 보관 후, 2일차 폐수 80m³/일 합산하여 130m³/일을 처리 후 방류하였다면 폐수배출량은 130m³/일 인지?

폐수배출량은 1일차 50m³/일, 2일차 80m³/일에 해당하며, 해당 시설의 방류량은 1일차 0m³/일, 2일차 130m³/일임

Q4

전량 재이용시설의 폐수위탁 처리 가능량

폐수 전량 재이용시설에서 폐수를 위탁처리 시에도 1일 50m³ 미만으로 위탁하여야 하는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호에 해당하는 전량재이용시설에서 시설이나 공정의 특성에 따라 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한 폐수가 부득이하게 공정 밖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폐수처리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위탁 가능한 폐수량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Q1

폐수배출량 증가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 유무

폐수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제1호에 따라 변경신고를 통해 가동시작 신고까지 같음할 수 있는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제1호에 따라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변경신고와 그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를 함께 이행하여야 함

Q2

폐수처리방법 변경 시 가동시작 신고대상 여부

방지시설의 처리방법 변경이(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가동시작의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제3호의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 대상에 해당함



1-2-2. 운영

Q3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후 가동시작 신고 기한 관련

물환경보전법 상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고 해당 시설을 몇 년 안에 설치하여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을 시 처벌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폐수배출시설 인허가를 득한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미리 가동시작 신고를 하여야 하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가동하기 전까지 가동시작 신고를 하여야 함

시설 미설치로 인해 조업을 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처벌조항은 없으나,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나 신고를 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Q4

전량재이용 또는 전량위탁 시설의 가동시작 확인

폐수배출시설은 가동시작 후 신고 후 시운전 기간이 끝나면 15일 이내 가동상태를 점검하는데 폐수배출시설 전량재이용 또는 전량위탁일 경우에도 시운전 기간이 끝나면 가동상태를 점검하는지?

폐수를 전량 위탁 또는 전량 재이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도 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운전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나, 수질오염물질의 오염도검사 절차는 생략할 수 있음

Q1

공동방지시설 운영에 따른 사업장 규모 질의

A, B가 공동방지시설을 운영하고 A에 공동방지시설이 설치되어 B의 폐수가 전량 A로 유입되어 처리되며, A는 허가량 600m³/일로 3종 시설이며, B는 허가량 300m³/일의 3종 시설일 때, A는 600m³/일을 기준으로 한 3종 사업장 인지? 아니면 900m³/일을 기준으로 한 2종 사업장인지?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공동방지시설의 운영 시에는 각 사업장별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간주함

따라서, A는 허가량 600m³/일의 3종 사업장 규모에 해당함

Q2

공동방지시설 전문업체 위탁운영 여부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에서 운영전문업체에 공동방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 및 물환경보전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는 관리대행 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따라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을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Q3 배출시설 폐쇄 후 공동방지시설 운영 가능 여부
 공동방지시설 운영 대표 사업장이 배출시설 폐쇄 후, 공동방지시설만을 계속 운영 가능한지?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는 배출 시설로부터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임
 기존 공동방지시설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배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공동방지시설을 운영할 수 없음

Q4 차량을 이용한 폐수의 공동방지시설 유입 가능 여부
 공동방지시설 운영규약의 개정을 통해 사업장 폐수를 차량으로 운반하여 공동방지시설에 유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배출된 폐수는 폐수배출 배관과 고정된 관망(폐수관거)을 통해 사업장에서 공동방지시설로 유입·처리하여야 함

Q5 폐수배출시설의 수질오염물질 측정 의무
 물환경보전법 상 폐수배출시설의 수질오염물질 자가측정 의무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물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라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할 수 있음
 다만 자가측정 주기, 횟수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Q6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결재권자 여부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서식) 결재란에 부서장, 공장장, 대표자 등이 있는데, 반드시 해당 경로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부서장 전결처리가 가능한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는 작성양식을 제공하는 것임
 운영일지는 사업장의 조직체거나 전결권 위임사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적정하게 결재 경로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1-2-3. 면제

Q1

사업장 폐수 재이용 시 방지시설 설치면제 여부

사업장(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재이용 시 방지시설 설치 대상 인지?

사업장에서 폐수를 재이용하는 것만으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호에 따라 폐수를 제조
공정에서 순환하여 전량을 재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방지시설 설치면제에 해당함

Q2

폐수를 지정폐기물로 처리 시 방지시설 설치대상 여부

고형물이 다량 함유된 폐수를 폐기물관리법 상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여도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호에 따라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 외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에 해당함
따라서,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에 해당함

Q3

폐가스 응축수 처리를 위한 별도 방지시설 설치 여부

사업장 내 폐가스 세정·응축시설에서 발생하는 응축수 처리를 위해 별도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사업장의 다른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가스를 세정·응축하는 시설의 응축수 처리를 반드시
별도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사업장에서 기존에 방지시설을 운영 중이라면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고, 그렇지 않다면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위탁처리 등을 통해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Q4

사업장 내 청소수의 방지시설 면제 대상 여부

사업장 내 바닥 청소수는 폐수배출시설의 공정폐수가 아니므로 방지시설
면제 대상인지? 면제 대상이라면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해당 시설에서 방지시설 외 별도로 오수처리시설을 운영 중이라면, 오수로 유입처리가
가능할 것임
다만, 바닥 청소수의 성상 및 농도에 따라 오수처리가 곤란하거나 오수처리시설이 없는 경우
해당 방지시설로 유입하여 적정처리하여야 함

1-2-4. 환경전문공사업

*환경전문공사업 관련 세부사항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소관부서(녹색산업혁신과)로 문의필요

Q5 보일러 스팀 응축수 처리 관련 방지시설 설치면제 여부
항상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사업장 내 보일러 스팀 응축수는 방지시설 설치 면제에 해당하는지?

사업장 내 보일러는 본 공정의 부속(관련) 시설로 응축수·세관수 등은 폐수배출 공정 및 처리공정에 포함되어야 함
다만, 해당 폐수가 항상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별도 방지시설 유입없이 공공수역으로의 방류가 가능함

Q6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폐수의 방지시설 설치 대상 여부
사업장 발생폐수를 타 시설에서 연구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경우에도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에 따라 폐수의 성상 및 폐수에 함유된 물질의 특성상 폐수를 제품 또는 원료로 사용하거나 다른 폐수의 처리, 연구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를 면제하고 있음
이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4의 제3호 가목에 따라 사업장 외부에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아 외부로 반출하여야 함

Q1 물환경보전법 상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자격
물환경보전법 상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영업 면허, 시공 자격 등과 관련한 규정은 무엇인지?

물환경보전법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영업과 관련한 별도 규정은 없음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서 환경전문공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5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설계·시공하여야 함

Q2 방지시설 설계·시공 시 자체 설계·시공 가능 여부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시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아닌 시설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설계·시공할 수 있는지?

수질오염방지시설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4호의 환경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바, 같은법 제15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설계·시공하여야 함
이는 타 사업장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영업(설계·시공) 시 반드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의무화한 것으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가 스스로 그 방지시설의 설치공사를 직접 담당하는 것은 가능함



1-3-1. 선임

Q3

동일한 방지시설의 단순 노후 교체 시공

가압부상조가 노후되어 최초 설계된 그대로의 사양(용량, 재질, 크기) 대로 교체할 경우에도 환경전문 공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지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은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된 자가 설계·시공하여야 함

다만,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가 스스로 그 방지시설의 설치공사를 직접 담당하는 것은 가능함

Q1

환경기술인의 사업장 상주 여부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에서 환경기술인으로 임명하고자 할 경우 사업장 내 실제 상주하지 않는 직원을 환경기술인으로 임명할 수 있는지?

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하는 바, 사업장 내 상주가 원칙임

아울러, 환경기술인이 상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제42조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Q2

방지시설 현장 종사자의 자격기준

환경기술인 외 방지시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사업장 규모에 맞는 자격기준이 있어야 하는지?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은 그 규모에 따라 적합한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함

환경기술인을 선임하였다면 그외 종사자에 대해서는 별도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종사자는 환경기술인의 지도감독을 받아 방지시설이 정상 운영되도록 하여야 함

Q3

관리대행기관의 환경기술인 선임방법 문의

환경기술인 선임을 대체하여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에 시설을 위탁한 경우 임명장 외 위수탁 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

사업장에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제8호에 따라 관리대행 기관에 위탁한 경우, 환경기술인을 선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환경기술인 선임의 증빙은 관리대행기관과의 위수탁 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Q4

환경기술인의 겸임(수질/대기 분야) 관련 문의

수질 및 대기 분야 1종 사업장으로 환경기술인 2명이 수질·대기를 겸임 하여 환경기술인을 운영 중에 1명이 휴직한 경우, 나머지 1명의 환경 기술인으로도 운영이 가능한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7의 비고8호에 따라 환경기술인이 대기과 수질분야 환경 기술인의 자격을 함께 갖춘 경우에는 겸임할 수 있음

Q5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와 환경기술인 겸직 가능 여부

해당 시설이 폐수배출시설(수질환경기술인)임과 동시에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인 경우, 환경기술인의 겸직이 가능한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7의 비고8호에 따라 대기와 수질환경기술인은 겸직이 가능하나,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관리자는 겸임이 불가함



1-3-2. 법정교육

Q1

환경관리대행기관의 법정교육 수료인정 여부

환경기술인의 법정교육 수료를 꼭 사업장 내 직원이 들어야 하는지? 대행업체에서 들어도 되는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제8호에 따라 수질환경관리대행 기관에 위탁한 경우 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이 사업장의 환경기술인 자격으로 환경기술인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은 법정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Q2

휴업 중인 사업장의 법정교육 대상 여부

법정교육 이수 후 사업장이 휴업을 했을 경우 휴업기간에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4의2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 시설의 전부 폐쇄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고 휴업 중인 사업장의 경우 같은법 제6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교육 의무대상 사업장이 아님

Q3

환경기술인의 법정교육 이수 확인방법

폐수배출시설 사업장 환경기술인으로 법정교육을 이수한 기록에 대한 조회 및 확인방법은?

물환경보전법 제6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법정교육은 환경부 산하 환경보전협회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음
교육 이수에 따른 기록은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 및 유선을 통해 확인 가능함

Q4

환경기술인의 교육이수 주기 기준

최초 교육을 기이수한 환경기술인을 새로 선임한 경우, 최초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환경기술인 또는 기술인력 등은 최초로 업무에 종사한 날 부터 1년 이내에 최초 교육을, 최초 교육 후 3년 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이는 사업장 기준이 아닌 인력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환경기술인이 신규 사업장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전문, 일반)이 그 전 사업장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종류와 동일 하다면 차기 도래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1-3-3. 자격

Q5

환경기술인 신규 선임에 따른 교육이수 여부

타 회사에서 교육을 이수한 환경기술인을 새로 선임한 경우,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환경기술인의 법정교육은 사업장 기준이 아닌 인력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환경기술인이 신규 사업장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전문, 일반)이 그 전 사업장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종류가 동일하다면 차기 도래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따라서, 환경기술인이 기존 4~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일반교육을 받았으나 1~3종 사업장의 전문교육 이수가 필요한 사업장에 선임된 경우라면 교육을 다시 이수하여야 함

Q1

1종 사업장에 복수의 환경기술인 선임 시 자격요건

1종 사업장에 2명의 환경기술인을 선임할 경우 2명 모두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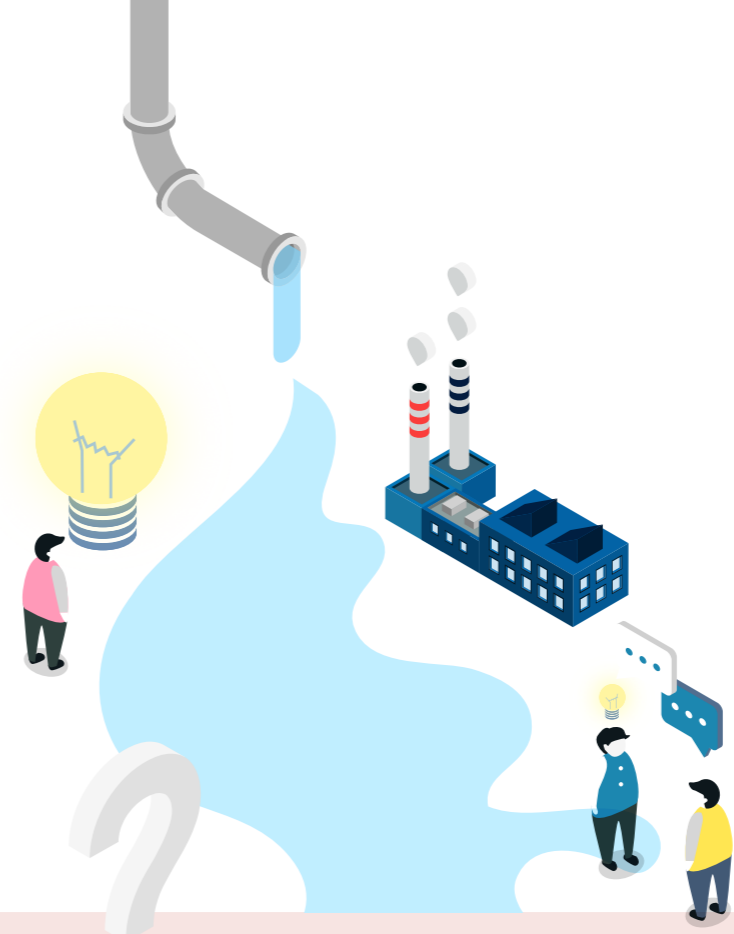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7에 따라 제1종 사업장은 수질환경기사의 자격을 갖춘 환경기술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함
따라서, 수질환경기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될 수 없음

Q2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공동방지사설 유입 사업장의 기술인 자격

특정수질유해물질을 1일 5m³ 배출하는 제5종 사업장이 공동방지사설로 폐수를 유입 처리할 경우, 선임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7의 비고 2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제4종 또는 제5종 사업장은 제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선임하여야 하나 1일 10m³이하의 시설은 제외됨
또한, 해당 사업장이 공동방지사설 운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제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선임하면 됨



제2장 측정기기

Q3

공동방지시설 유입 사업장의 환경기술인 임명

A(4종), B(5종), C(5종) 3개 사업장의 폐수는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며, A사업장이 해당 시설의 운영을 담당할 경우 A만 환경기술인을 선임하면 되는 것인지?

3개 사업장 모두 각 사업장 종별 규모에 맞는 환경기술인을 선임하여야 함
 다만, A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7의 비교4에 따라 제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선임하여야 함

Q4

새로운 환경기술인의 임명 기한

환경기술인이 병가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새로운 기술인의 임명 기한은?

환경기술인이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임명하여야 함

2-1 TMS-부착 및 면제

- 1. 사업장 규모 변경에 따른 수질TMS 부착대상 여부 54
- 2. 수질TMS 정도검사 유예 가능 여부 54
- 3.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 시 수질TMS 부착 제외 여부 55
- 4. 3종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수질TMS 부착 여부 55
- 5. 수질TMS 부착명령 기한 중 사업장 규모 변경으로 부착 면제 여부 56
- 6. 1년 이내 폐쇄 예정인 시설의 수질TMS 부착 여부 56
- 7. 처리시설 및 측정기기 운영 동일업체 위탁금지 법 적용 대상 57
- 8. 처리시설 및 측정기기 운영 동일업체 위탁금지 시행일 57

2-2 측정기기-부착 및 면제

- 1.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직유입 시 적산유량계 부착 제외 여부 58
- 2. 전량 위탁 제4종 사업장 측정기기 부착대상 여부 58
- 3.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세차시설의 적산유량계 부착 여부 59
- 4.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사업장의 측정기기 부착 여부 59
- 5. 폐수배출시설 유입수 적산유량계 설치 여부 60



2-1. TMS-부착 및 면제

Q1**사업장 규모 변경에 따른 수질TMS 부착대상 여부**

폐수배출량 감소에 따라 사업장 규모가 기존 2종에서 3종으로 변경된 경우 수질TMS 부착유예가 가능한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7에 따라 사업장 종별 규모가 3종에 해당하는 경우 수질TMS 부착대상이나 비고 9. 나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까지 부착을 유예하고 있음
따라서, 사업장 규모가 2종에서 3종으로 변경된 경우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측정기기의 부착 제외 대상에 해당 되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시 부착하여야 함

Q2**수질TMS 정도검사 유예 가능 여부**

정도검사 실시기관 및 TMS설비업체의 사정으로 정도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 정도검사 일자 유예가 가능한지?

사업장에서 기존 측정기기의 정도검사기간 이내에 정도검사 신청을 하였으나 검사기관의 일정에 따라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도검사 준수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Q3**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 시 수질TMS 부착 제외 여부**

제2종 사업장(폐수배출량 1,200m³/일) 설치·운영 계획 중에 있으며,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는 경우 수질TMS 의무 부착 대상인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7 비고 제3호 다목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전부 유입시키는 경우 수질자동측정기기와 부대시설을 모두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음

Q4**3종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수질TMS 부착 여부**

제3종 사업장(폐수배출량 205m³/일)에서 물리화학·생물학적 처리를 완료한 방류수가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수질TMS 부착 대상인지?

측정기기 부착 유예 대상인 3종 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7 비고 제9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초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함

Q5

수질TMS 부착명령 기한 중 사업장 규모 변경으로 부착면제 여부
폐수배출량 감소에 따라 실제 4종 사업장에 해당하나, 현재 제3종 사업장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TMS 부착명령 받았다면, 사업장 종별을 변경하여 부착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사업장 종별 변경 전 지자체 점검결과 배출허용기준의 초과 통보를 받아 측정기기 부착 명령을 받았을 경우, TMS 부착 기한 내에 사업장 규모(종)를 변경한다면 부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Q6

1년 이내 폐쇄 예정인 시설의 수질TMS 부착 여부
현재 터널공사 진행 중인 사업장으로 폐수발생 기간이 약 10개월 정도 예상되는 경우 TMS 부착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3호 마목에 따라 시·도지사가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쇄할 배출시설로 인정한 시설은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모두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음

Q7

처리시설 및 측정기기 운영 동일업체 위탁금지 법 적용 대상
시설소유주(지자체 또는 배출사업장)가 직접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법 적용을 받는 것인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제4항에 따라 시설소유주(지자체 또는 배출사업장)가 직접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측정기기도 직접 관리할 수 있으며, 측정기기 관리만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단서조항은 처리시설의 운영과 측정기기 관리를 동일한 사업장에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하면서 측정기기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을 받음

Q8

처리시설 및 측정기기 운영 동일업체 위탁금지 시행일
법 시행(2020.11.27) 당시 처리시설과 측정기기 운영을 동일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경우는?

물환경보전법(법률 제16605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와 처리시설 위탁·운영자가 동일한 경우는 시행일부 1년까지는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2020년 11월 27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한해서는 2021년 11월 26일까지 유지가 가능하나, 이후에는 해당 법을 준수하여 다른 업체에 위탁하여야 함

2-2. 측정기기-부착 및 면제

Q1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직유입 시 적산유량계 부착 제외 여부**
 폐수를 1차 처리하지 않고 공공하·폐수처리시설로 직접 유입 시 하·폐수 적산 유량계의 부착도 면제되는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7 비고 제3호 다목에 따라 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전부 유입시키는 경우 수질TMS와 부대시설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하수·폐수 적산 유량계는 별표7 제4호에 따라 부착하여야 함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8 제2호 다목은 1차 처리한 폐수를공공하수처리시설 등으로 연계유입 시 부착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폐수를 1차 처리하지 않을 시 하수·폐수 적산 유량계 부착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

Q2 **전량 위탁 제4종 사업장 측정기기 부착대상 여부**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제4종 사업장의 경우 측정기기 부착면제 대상 인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7 제3호와 제4호에 따라 제4종 사업장은 적산전력계, 용수적산 유량계, 하수·폐수적산유량계를 부착하여야 함

다만, 별표7 비고 제8호 나목에 따라 시행령 제33조 제2호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 장은 적산전력계 및 하수·폐수 적산유량계 부착이 면제 됨

Q3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세차시설의 적산유량계 부착 여부**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제4종 사업장의 경우 적산유량계를 부착해야 하는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7 비고 제8호 가목에 따라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에 일정한 관로를 통하여 생산공정에 전량 순환하거나 재이용하여 실질적으로 폐수가 배출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하수·폐수 적산유량계 부착이 면제 됨

용수적산유량계는 부착하여야 함

Q4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사업장의 측정기기 부착 여부**
 항상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방지시설 면제 사업장도 측정기기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방지시설 면제 사업장은 적산전력계 및 하수·폐수 적산유량계 설치는 면제되나, 용수적산유량계는 설치하여야 함

다만, 제4종 이상으로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방지시설 면제 사업장(공공 하·폐수처리시설 유입 제외)은 하·폐수 적산유량계 설치대상에 해당됨

Q5 폐수배출시설 유입수 적산유량계 설치 여부
 폐수배출시설 유입수 쪽에도 적산유량계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지?

물환경보전법 상 폐수배출시설의 유입부분에 별도 적산유량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

다만, 전 사업장에 설치가 의무화 되어있는 용수적산유량계가 배출시설의 유입부 적산유량계의 기능을 함

제3장 행정처분



3 행정처분

- 1. 관리대행기관 귀책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 여부 62
- 2. 조업정지/과징금 처분의 재변경 가능 여부 62
- 3.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행정처분 차수 적용 63
- 4. "폐쇄명령"의 의미 63
- 5. 조업정지 중 기계설비의 유지보수 활동 여부 64



3. 행정처분

Q1

관리대행기관 귀책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 여부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사유로 인해 폐수배출시설 문제발생 시 책임 부과 대상은 어디인지?

물환경보전법 상 행정처분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운영자를 대상으로 부과됨
이와는 별도로 환경관리대행 기관은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별 표 2에 따라 별도로 행정처분이 부과됨

Q2

조업정지/과징금 처분의 재변경 가능 여부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 후 다시 조업정지로 처분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해당 사업장의 의견을 수용하여 이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한 변경 또는 조정은 불가함

Q3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행정처분 차수 적용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을 300% 초과한 경우 2단계 높은 차수를 적용하여 3차로 처분하여야 하는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2제2호가목 비고6은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에 따라 처분기준을 경감 또는 중과하는 규정임
특정수질유해물질 초과율이 300% 초과 시 1차 행정처분 기준보다 2단계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3회차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것이지 위반 횟수 자체를 3차 처분으로 의제한 것은 아님

Q4

“폐쇄명령”의 의미

폐수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은 그 장소에서 해당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근본적으로 금지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새로이 설치신고를 할 수 있는지?

물환경보전법 상 폐쇄명령은 폐수배출시설의 철거나 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 대상의 시설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더 이상 배출되지 않도록 시설의 기능을 정지하는 것으로 사업장내 새로운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의미는 아님
다만, 동일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경우에는 폐쇄명령의 사유가 된 위반사항과 관련한 시설의 개선이 완료되어야 가능할 것임

Q5

조업정지 중 기계설비의 유지보수 활동 여부

조업정지 행정처분 기간 중 시설의 개보수 등 운영을 위한 사전준비 활동도 불가능한지?

조업정지 기간에는 처분 대상시설인 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을 가동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나, 시설의 개·보수, 안전상 위험 상황의 도래가 우려되는 경우 또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준비작업 등 제품 생산과 직접 관계가 없는 행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이로 인하여 폐수가 발생된다면 폐수처리업체 등을 통해 반드시 적정처리해야 함



제4장 기타수질오염원

4 기타수질오염원

- 1. 농산물 세척 및 절단시설의 기타수질오염원 해당여부 66
- 2. 기타수질오염원의 폐쇄신고 절차 66
- 3. 농기계 수리시설 기타수질오염원 해당 여부 67
- 4. 기타수질오염원의 면적 산정기준 관련 67



4. 기타수질오염원

Q1 **농산물 세척 및 절단시설의 기타수질오염원 해당여부**
 농산물(채소)을 단순 세척, 절단, 살균 처리하는 시설은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하는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1차 농산물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물사용량이 1일 5㎡ 이상(공공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는 경우에는 1일 20㎡ 이상))은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함
 해당 시설은 세척 외 절단 및 살균 처리 등의 공정이 있는 시설로서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하지 않음

Q2 **기타수질오염원의 폐쇄신고 절차**
 기타수질오염원에 대한 별도의 폐쇄신고 절차가 있는지? 아니면 변경 신고를 통해 폐쇄하여야 하는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폐쇄(변경) 신고를 하고 관할 인허가 기관에 신고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할 것임

Q3 **농기계 수리시설 기타수질오염원 해당 여부**
 농기계 수리시설도 운수장비 정비시설로써 물환경보전법 상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하는지?

해당 시설은 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계·기구·장비류의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바, 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에는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설치관리 신고를 하여야 함

Q4 **기타수질오염원의 면적 산정기준 관련**
 운수장비 정비(200㎡) 또는 폐차장 시설(1,500㎡)의 기준인 면적에 사무실을 포함하는지?

기타수질오염원 적용기준 중 면적은 해당 시설로 인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면적을 의미하는 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가능성이 없는 사무실 면적은 규모 산정 시 제외할 수 있음

제5장 폐수처리업

5 폐수처리업

- 1. 폐수처리업 처리시설 허가기준 중 처리능력 기준 69
- 2. 폐수처리업 처리시설 허가기준 중 운반장비 기준 69
- 3. 2년간 영업실적 부재 시 폐수처리업 등록 취소 예외 여부 70
- 4. 폐수처리업 조업정지 중 수탁업무 가능 여부 70
- 5.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시기 71
- 6. 수탁폐수 전자인계인수시스템(물바로시스템) 입력 대상 71

5. 폐수처리업

Q1 폐수처리업 처리시설 허가기준 중 처리능력 기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0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 중 폐수처리시설의 총 처리능력은 7.5m³/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최소처리능력 기준인지? 최대 처리능력 기준도 있는지?

시간당 7.5m³ 이상 처리능력을 갖추어야 함은 최소한의 처리능력을 의미하며, 최대 처리능력에 대한 별도 상한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Q2 폐수처리업 처리시설 허가기준 중 운반장비 기준
 폐수처리업 허가요건 중 운반장비 항목에서 차량 아닌 관로를 통한 폐수 운송으로 운반장비 항목을 갈음 가능한지?

폐수처리업 허가시 폐수 운반장비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는 것이어야 함
 다만, 아파트형 공장내에서 수집하는 폐수에 한하여 고정식 파이프라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Q3

2년간 영업실적 부재 시 폐수처리업 등록 취소 예외 여부
법원 경매 기간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2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 “허가의 취소”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법원 경매 기간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2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물환경보전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수처리업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함
물환경보전법 제65조 제2항은 경매 등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영업시설을 인수한 자는 종전 폐수처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승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Q4

폐수처리업 조업정지 중 수탁업무 가능 여부
폐수처리업자가 조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부과받은 경우, 저장 시설에 보관만 하는 수탁업무는 가능한지?

폐수처리업의 조업의 범위는 수탁받은 폐수의 처리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며, 폐수를 수탁 받아 저장하는 공정을 포함한다고 할 것임
따라서, 폐수처리업은 폐수를 수탁받아 저장하는 행위부터 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Q5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시기
폐수처리업의 시설검사 제도가 시행(20.11.27) 되었는데, 운영중인 폐수처리시설의 검사시기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라 폐수처리업자가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되, 최초의 정기검사는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받아야 함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를 완료하였거나 운영중인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폐수 수탁처리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폐수 재이용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정기 검사를 받으면 됨

Q6

수탁폐수 전자인계인수시스템(물바로시스템) 입력 대상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사업장도 폐수를 위탁할 때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 관리시스템(물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지?
폐수를 지정폐기물로 처리하는 경우는?

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사업장도 발생하는 소량의 폐수를 폐수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할 수 있으며, 물환경보전법 제66조의2에 따라 물바로시스템에 인계내역을 입력하여야 함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호에 따라 폐수를 지정폐기물로 위탁처리하는 경우 물바로시스템 입력대상이 아님



산업폐수 분야
질의회신 사례집

환경부 수질관리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